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



구 미 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2012. 9. 27일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12. 1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으며,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2015년말 준공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으로
-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제공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설치 계획중인 「국가특수 재난훈련장」 유치를 위해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토지) 교환 】

- 취득대상 - 국유지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433번지
 - 면 적 : 17,633m²
 - 기준가격 : 1,234,310천원(가감정가)
- 처분대상 - 사유지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31번지 외 23필지
* 환경자원화시설 잔여부지
 - 면 적 : 35,032m²
 - 기준가격 : 1,313,700천원(가감정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건	17,633	1,234,310				1건	17,633	1,234,31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17,633	1,234,310			1건	17,633	1,234,310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1건	35,032	1,313,700				1건	35,032	1,313,700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건	35,032	1,313,700			1건	35,032	1,313,700

2014년도(수시-2차)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1	처분 (토지)	답	산동면 백현리 31	2,057	2,057	77,137	2014년	○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 및 국가특수재난 훈련장 유치	소 방 방재청	가감 정액
		답	산동면 백현리 36	1,339	1,339	50,212	"			
		답	산동면 백현리 37	1,765	1,765	66,187	"			
		전	산동면 백현리 38	198	198	7,425	"			
		전	산동면 백현리 39	2,671	2,671	100,162	"			
		답	산동면 백현리 42	1,018	1,018	38,175	"			
		답	산동면 백현리 141	3,772	3,772	141,450	"			
		전	산동면 백현리 142	1,058	1,058	39,675	"			
		전	산동면 백현리 143	3,167	1,889	70,837	"			
		답	산동면 백현리 32-2	1,367	1,367	51,262	"			
		답	산동면 백현리 34-3	957	957	35,888	"			
		답	산동면 백현리 35-3	1,054	1,054	39,525	"			
		답	산동면 백현리 40-1	1,322	1,322	49,575	"			
		답	산동면 백현리 40-2	1,187	1,187	44,513	"			
		답	산동면 백현리 41-3	1,331	1,331	49,913	"			
		답	산동면 백현리 41-4	860	860	32,250	"			
		답	산동면 백현리 41-5	1,061	1,061	39,788	"			
		전	산동면 백현리 43-3	329	329	12,338	"			
		답	산동면 백현리 138-2	1,058	1,058	39,675	"			
		전	산동면 백현리 138-3	423	423	15,863	"			
		답	산동면 백현리 138-4	2,454	2,454	92,025	"			
		답	산동면 백현리 138-5	622	622	23,325	"			
		답	산동면 백현리 139-2	2,746	2,746	102,975	"			
		전	산동면 백현리 140-3	2,494	2,494	93,525	"			
	취득 (토지)	임야	산동면 동곡리 433	17,633	17,633	1,234,310	"			
계	토지	처분	24필지	36,310	35,032	1,313,700				
		취득	1필지	17,633	17,633	1,234,310				
	건물 기타	처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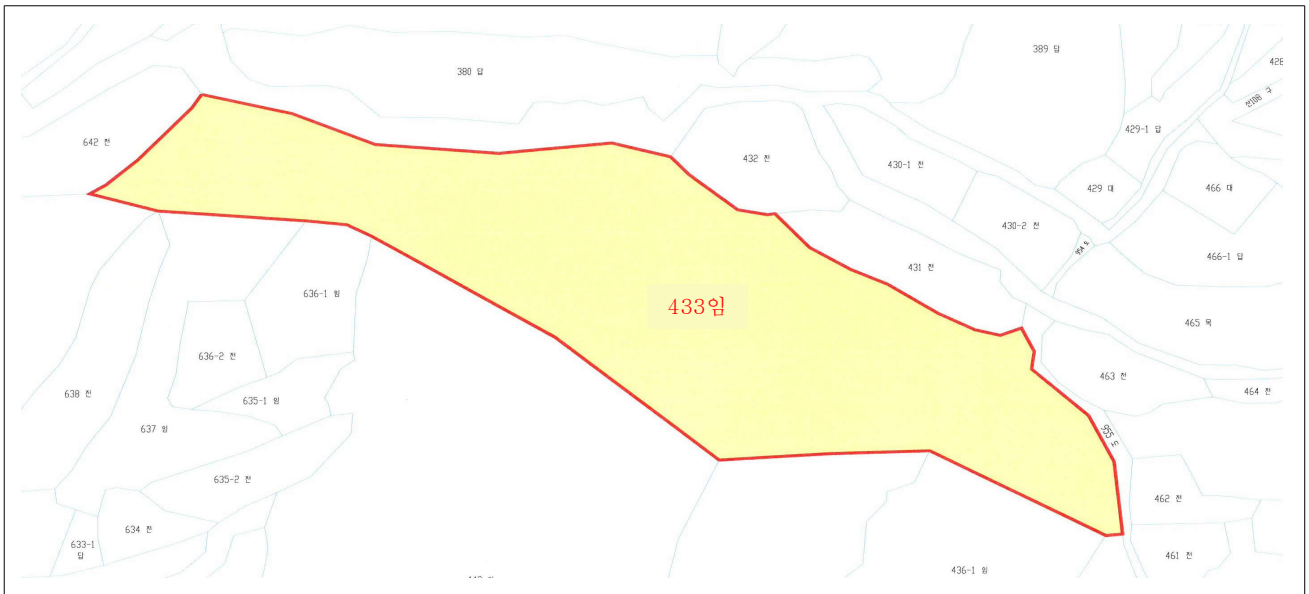
취 득 (교 환) 대 상 현 황

□ 재산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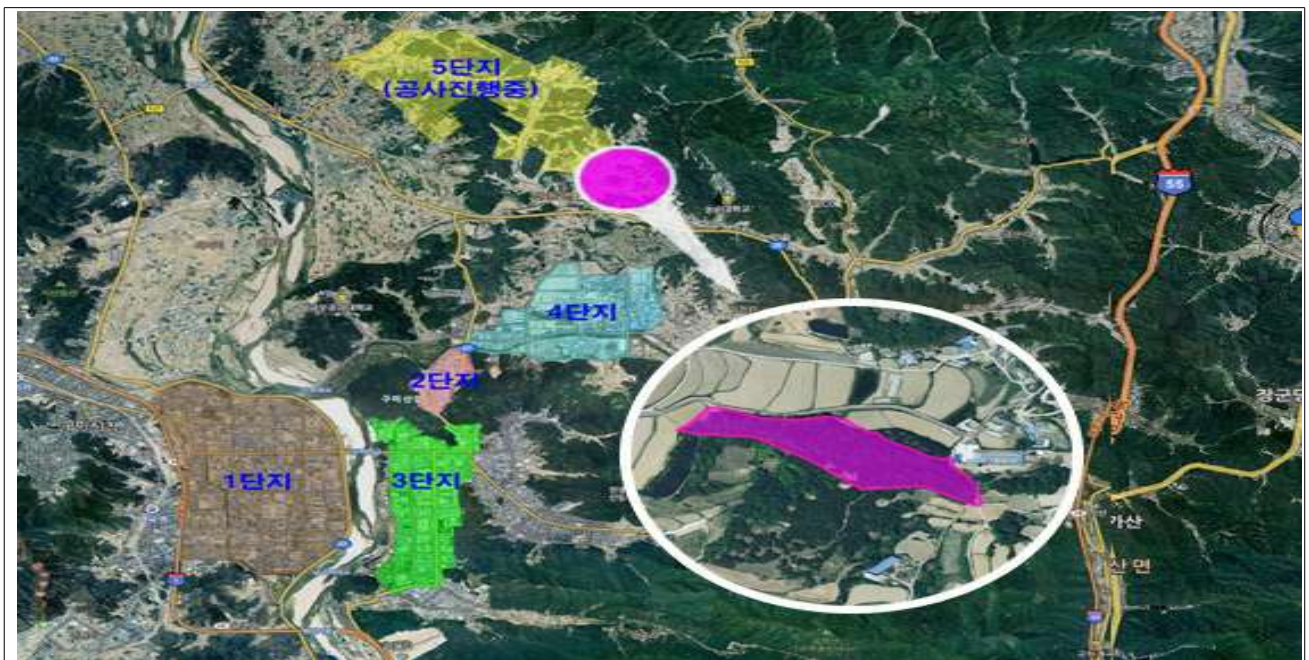
○ 소 재 지 :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433

○ 면 적 : 17,633m²

□ 지 적 도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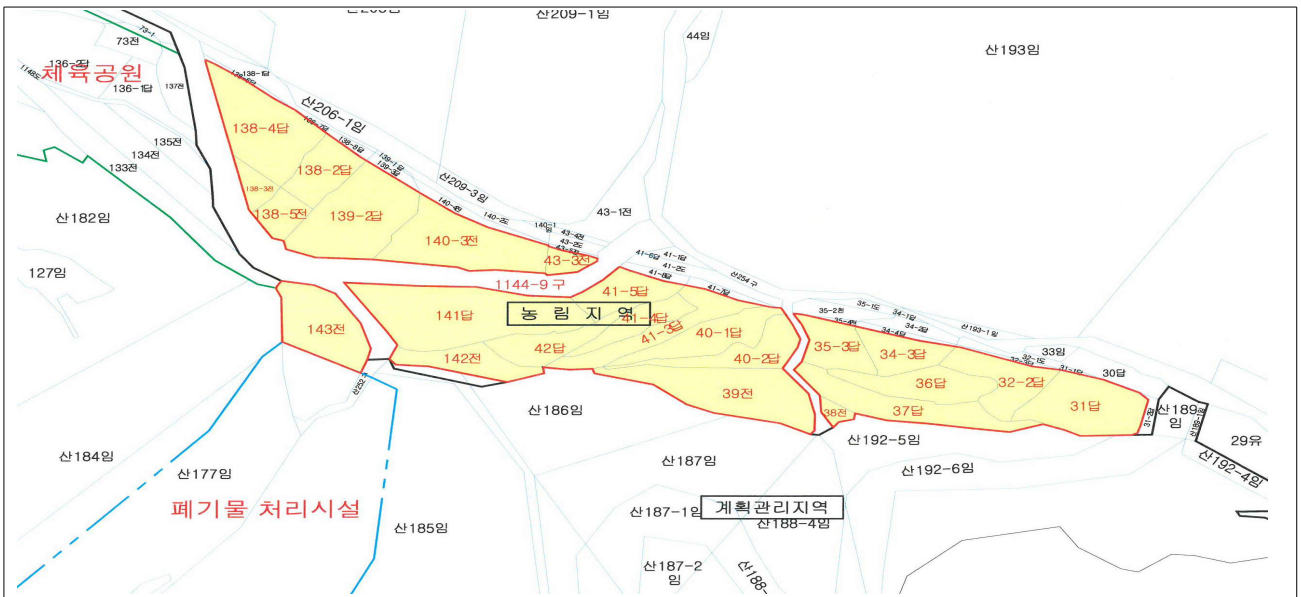
처 분 (교 환) 대 상 현 황

□ 재산의 표시

○ 토 지 :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139-2외 23필지

○ 면 적 : 35,032m²

□ 지 적 도



□ 위 치 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 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